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78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신정훈·이기헌·김현정

박희승 • 이재관 • 부승찬

한정애・양부남・정성호

박용갑 • 임미애 • 조인철

모경종 • 문대림 • 강득구

(15일)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 개선 등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 고 이해관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금고 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고의 해산 • 합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회원의 투표

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18조제9항).

- 나. 총회 또는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및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제1차 결선투표 선거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제64조의2).
- 다. 대의원 불법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토록 함(안 제22조제2항).
- 라.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3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 마.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제74조의3,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

까지, 제83조, 제85조).

아. 선거범죄의 자수자에 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함(안 제87조).

법률 제 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개최 일시, 개회 장소 및 회의목적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회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은 전자우편,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 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1. 해산·합병
 -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 투표와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출.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투표의 통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본다.

제18조제8항제1호 중 "회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조제8항제2호 본문 중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를 "대의원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단서 중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를 "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선거운동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또는 대의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원의"를 "임원 및 대의원의"로, "임원 선거"를 "선거"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추천한"을 "각각 추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위원이"를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위원"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제3장에 제10절(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제73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 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금고
 - 2. 중앙회
 -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 대여·개발 처분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 4. 금고등의 부실자산 보전・추심 수임(受任)
-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 관리·매각 및 매매 중개
- 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

- 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실자산의 매입
-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로 본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와 중앙회"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이하 "금고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을 "금고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각각 "금고등"으로 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령"을 "명령(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의3제1항 중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금고감독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금고감독위원"이라 한다)"으로, "추천된"을 "각각 추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금고감독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및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각각 "금고감독위원"으로 한다.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5까지를 각각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6까지로하고,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 2. 예적금의 지금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 ② 주무부장관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향후 부실금고에 해당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한다.
- 1.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사항 가. 금고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 나. 임원에 대하여는 견책 또는 경고
 - 다. 직원에 대하여는 견책 또는 경고 · 주의
-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 조직의 축소
-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 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6. 합병
-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④ 주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 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 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

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정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의 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제3항의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의3(종전의 제80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80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계약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80조의4(종전의 제80조의3)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80조의3) 제6항 전단 중 "제80조의2제1항"을 각각 "제80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80조의5(종전의 제80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 중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제1항의 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제3항제4호,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 3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제80조의2제3항제4호 및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제80조의5(종전의 제80조의4)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관리인"을 "권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80조의6(종전의 제80조의5)제1항 중 "제80조의2제1항"을 "제80조의2 제7항"으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제79조의5제1항제1호"를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제3항제4호·제5호 및 제80조의2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85조제5항 중 "제2조제5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

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
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최 7일 전(같은 목적으로 총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	를 다시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
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최 전날)까지 개최 일시, 개회
공고하여야 한다.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회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를 발
	<u> 송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소
	집통지서의 발송은 전자우편,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u> 갈음할 수 있다.</u>
	1. 해산・합병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u>선임</u>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u>의결·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u>

법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 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 투 표와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 는 사람을 선출. 다만, 후보자 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 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 ③ 투표의 통지・방법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 원회"로 본다.
- (현행과 같음)

-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 ⑦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 ⑦ (생 략)
 - ⑧ 이사장의 선출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u>회원</u>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단서 신설>
- 2. <u>총회에서 선출하거나 대의원</u> <u>회</u>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 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u>결정한다</u>.

⑨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 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 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임 원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 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1.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원
<u>다만,</u> 최다득표
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u>대의원회</u>
નો નો નો
<u>결정하되,</u>
<u>결성하되,</u>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u>다</u> .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다. ⑨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을 제외한 임원도 같은 방 법으로 이사장과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 ①·① (생 략)
- 제22조<u>(임원의 선거운동 제한)</u> ① 7 (생 략)
 -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 ⑤ (생 략)
- 제61조(감사위원회) ①·② (생 7 략)
 - ③ <u>감사위원</u>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u>추천한</u>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u>.</u>
· ⑩·⑪(현행과 같음)
제22조(선거운동 제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임원 또는 대의원
<u> </u>
1. ~ 4. (현행과 같음)
5. 임원 및 대의원의
0. <u>日已 </u>
선거
<u>u/ 1</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감사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각각 추천
<u> </u>
<u> </u>
•

- ④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u>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u>의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 ①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 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 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⑧ (생 략)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저동)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u>결정한다</u>.

④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u><삭 제></u>
⑤ 감사위원
·.
<u>⑥</u> 감사위원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세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u>결정하되, 최</u>
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② ~ ⑩ (생 략)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 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 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 여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 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 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 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신 설>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금고
- 2. 중앙회
-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u>가.</u>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u>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u> <u>득</u>
-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 4. 금고등의 부실자산 보전·추심 수임(受任)
-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채권추심수임
-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 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 관리·매각 및 매매 중개
- 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 · 비 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신 설>

개발

-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 른 출자 및 투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 무에 부대하는 업무
-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 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 는 업무
-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차입금
 -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 글
 -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수 있다.
 -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u>1. 부실자산의 매입</u>
 -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

<u><신 설></u>

-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자금
-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 기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 신고인이 되려는 경우"는 "「민사고인이 되려는 경우"는 "「민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 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 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 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하여 감독한다.

- 1. (생략)
- 2. <u>중앙회</u>에 대한 감독: 주무부 장관
- 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 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 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
<u>로 본다.</u>
제74조(감독 등) ①
글 <u>-</u>
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이하
"금고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u>같다)</u>
1. (현행과 같음)
2.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②
금고
<u> </u>

한정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은 <u>금고 또는 중</u> <u>앙회를</u>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 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u>금고 또는 중앙회</u>에 대 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u>.</u>
③
금고
<u>ㄷ</u>
<u>.</u>
④ 금고등을
·.
⑤
<u>금고등</u>
1. • 2. (현행과 같음)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ㆍ검사와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⑦ (생략)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 본)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6조(외부 감사) ①・② (생 제7

6
<u>금고등</u> -
⑦ (현행과 같음)
세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
분) ①
명령(제80조의2제3항에 따
른 명령은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에76조(외부 감사) ①·② (현행

략)

-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 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 -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 으로 한다.

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장
과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
서 "금고감독위원"이라 한다)
각각 추
천된
② 금고감독위원
<삭 제>

③ 금고감독위원---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 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신 설>

④ 금고감독위원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원의 보
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고를 준비금관리위
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 2. 예적금의 지금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 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 려운 금고

- ② 주무부장관은 취약한 재무구 조로 인하여 향후 부실금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고를 준비금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 고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 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 영개선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사항
 - <u>가. 금고에 대하여는 경고·</u> 주의
 - <u>나. 임원에 대하여는 견책 또</u> <u>는 경고</u>
 - <u>다. 직원에 대하여는 견책 또</u> <u>는 경고·주의</u>
-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조직의 축소
-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u>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u> 한 수신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 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u>지</u>
- 6. 합병
-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 도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 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정성을 높이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④ 주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야 한다.
-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 령
-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 령
-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 <u>령</u>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조치
-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 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 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
- 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정무정지 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 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 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 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의 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제3항의 요구 또는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 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 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 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제>

<u>제80조의2</u>(계약이전의 결정) <u>①</u> <u>제80조의3</u>(계약이전의 결정) <u><삭</u>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 고(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

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 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 · 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 (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 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 다.
-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 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 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 탁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① 제80조의2제7
<u>ठ</u> }
<u>②</u> ~ <u>④</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⑤ 계약이전
,
<삭 제>

⑥ (현행 제8항과 같음)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①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 ② <u>제80조의2제1항</u>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 ⑥ 주무부장관은 <u>제80조의2제1</u> 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 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 된 자료를 보관・관리하도록 하 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

① 제80조의2제7항
<u>.</u>
② 제80조의2제7항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제80조의2제7항</u>
⑤ <u>제80조의2제7항</u>
⑤ 제80조의2제7항 6 제80조의2제7
⑤ 제80조의2제7항 6 제80조의2제7
⑤ 제80조의2제7항 6 제80조의2제7

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 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 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 이 이를 정한다.

<u>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u> <u>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u> 등) <u><신 설></u> 등) <u>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u>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 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 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 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신 설>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2 제3항제4호,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 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제80조의2제3항제4호 및 제8 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 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 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수 없다.
- ③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 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 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u>인</u> 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의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이를 "주무부장관"으

<u>4</u>
<u>제1항의 관리인</u> -
<u>⑤</u>
임원
⑥ 인
으 <u>-</u> 정되는
· ⑦
<u> </u>
را ال
<u>권리인</u>
<u>이 경우 「상법」</u>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
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로 본다.

제80조의5(파산신청 등) ① 주무 부장관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 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 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 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 1항제1호·제74조의3제1항제3 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에 따 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 · 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4조 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 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 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무
장관"으로 본다.
<u>제80조의6</u> (파산신청 등) ①
<u>제80조의2제7항</u>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청문 등)
<u>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u>
조의2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
<u>80조의2제6항 · 제7항</u>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85조(벌칙) ① ~ ④ (생 략)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⑥ (생략)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85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 음)

- 해당하는 -----
- 1. 제2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고 나 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 ⑥ (현행과 같음)

|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금품·향응, 그 밖 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

- 1.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한 자
- 2.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제6

 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때로 본다.

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 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
-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② <u>제1항 본문</u>-----
